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29
----------	------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출자 : 하남시장

1. 개정이유

- 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지원 최소 기준(10세대 이상) 규정을 삭제하여 주택 수가 적은 취약지역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택이 없는 근생 등 지역 포함)에도 도시가스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며,
- 나.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가스공급시설로서 가스배관시설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어 GB지역 국·공유지 도로 등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에 용역비용(실시계획인가 도서 등 포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는 취약지역의 정의 개정(안 제2조)
-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주택이 없는 근생 등 지역 확대)
- 나. 도시가스 공급 지원대상 내용 삭제(안 제3조)
- 제3조제2항의 개정만으로 내용이 충족하여 제3항 삭제
- 다. 도시가스 공급 지원범위 내용 개정(안 제4조)
- GB지역 국·공유지 도로 등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실시계획인가 도서 등 포함)비용도

도시가스 설치비용에 포함되어 지원하기 위해 개정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22. 9. 13. ~ 2022. 10. 4. [21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덧붙임

10. 관련부서 :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으로, “10세대 이상의 주택이 있고 주택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유지시켜”를 “유지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공급관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일 것
2.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로부터 공급관 설치에 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것
3. 사업자와 공급협회가 이루어진 지역일 것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본관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에 공급관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본관 설치에 따른 시설 분담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일 것
2. 도로의 신규개설 또는 도로 재포장 공사 지역일 것
3. 그 밖에 도시가스 사업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일 것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시설분담금의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본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일체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
2. 공급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일체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 을 “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요되는” 을 “드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그 밖” 을 “그 밖”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30일이내” 를 “30일 이내” 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는” 을 “자는” 으로,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 를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일내에 보조금” 을 “기일 내에 보조금” 으

로,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기일내에도” 를 “기일내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사용승낙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가” 를 “자가”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간내” 를 “기간 내”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허위” 를 각각 “거짓”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기업지원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업지원과장 석 승 호
	팀장 직위·성명	에너지관리팀장 최 진 우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홍 민 영 (790-526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u>10세대 이상의 주택이 있고 주택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u>중 <u>다음 각호의</u>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p>가.·나. (생 략)</p> <p><신 설></p> <p>3. (생 략)</p> <p>4.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p> <p>5. “공급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p> <p>6.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u></p> <p>3. (현행과 같음)</p> <p>4.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p> <p>5.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p> <p>6. ----- -----</p>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 장치를 말한다.

7.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시설을 포함한다.

8.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시설분담금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공급관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
2.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3.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유지해 -----
-----.

<삭 제>

<삭 제>

제3조(지원대상)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공급관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일 것
2.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로부터 공급관 설치에 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것
3. 사업자와 공급협약이 이루어진 지역일 것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본관 공

② 본관 보조금 지원은 본관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에 공급관 설치가 가능한 지역’ 으로 아래 사항이 충족된 지역일 경우 본관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이 충족되는 지역
2. 도로의 신규개설 또는 도로 재포장 공사 지역
3. 그 밖에 도시가스 사업자와 시장이 협의 결정된 지역

③ 제2항의 ‘2년 이내 공급관 설치 가능지역’ 이란 제11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시설분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공급관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사 종료 후 2년 이내에 공급관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본관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일 것
2. 도로의 신규개설 또는 도로 재포장 공사 지역일 것
3. 그 밖에 도시가스 사업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일 것

제4조(지원범위)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시설분담금의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본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일체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
2. 공급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일체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삭 제>

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취

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에 필요한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해당지역 주택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제8조에 따른 신청서 제출

2. 교부받은 보조금의 별도 계정 설정 및 보조금 등의 정산

제8조(보조사업 지원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조

<삭 제>

제8조(보조사업 지원 신청) -----
----- 자는 -----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소요예상액

4. (생략)

5.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공사비 산출) ① (생략)

②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이 요청한 취약지역의 분담금을 산출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교부) 제9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일내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촉구할 수 있으며, 촉구한 기일내에도 보조금 교부 신청이 없을 경우 보조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 2. (현행과 같음)

3. ----- 드는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

제10조(공사비 산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없으면

----- 30일 이내-----
-----.

제11조(보조금 교부) -----
----- 자
는 -----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
----- 기일 내에 보조금 -
----- 한 차
례만 -----
----- 기일 내에

-----.

1. (생략)

2. 토지사용승락서

3. (생략)

제13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보조사업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3. (생략)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1. (현행과 같음)

2. 토지사용승낙서

3.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 자
가 -----

-----.

1. (현행과 같음)

2. ----- 기간 내-----

3. (현행과 같음)

4. 거짓 -----

5. ----- 거짓 -----

참고사항

□ 경기도 31개 시·군 도시가스 공급 조례 관련 현황

○ 경기도 고시 가구수 미만 : 10개, 기타(세대 등 규정 없음) 2개, 주택 10세대 등 이상 : 14개, 미조례 : 5개

연번	시군명	조례 (유,무)	지원액	지원대상 및 범위	비고
1	수원시	○	전부 또는 일부	경기도 고시 가구수 미만	
2	안산시	○	전부 또는 일부	경기도 고시 가구수 미만	
3	의정부시	○	전부 또는 일부	경기도 고시 가구수 미만	
4	이천시	○	전부 또는 일부	경기도 고시 가구수 미만	
5	파주시	○	전부 또는 일부	경기도 고시 가구수 미만	
6	양주시	○	전부 또는 일부	경기도 고시 가구수 미만	
7	안성시	○	일부	경기도 고시 가구수 미만	
8	양평군	○	일부	경기도 고시 가구수 미만	
9	여주시	○	일부	경기도 고시 가구수 미만	
10	연천군	○	일부	경기도 고시 가구수 미만	
11	가평군	○	일부	세대 등 규정 없음	
12	고양시	○	일부	세대 등 규정 없음	
13	동두천시	○	전부 또는 일부	10세대 이상 거주	
14	부천시	○	전부 또는 일부	10호 이상의 주택	
15	과천시	○	전액 또는 일부	20가구 이상	
16	김포시	○	전부 또는 일부	10동 이상의 주택	

□ 경기도 31개 시·군 도시가스 공급 조례 관련 현황

○ 경기도 고시 가구수 미만 : 10개, 기타(세대 등 규정 없음) 2개, 주택 10세대 등 이상 : 14개, 미조례 : 5개

연번	시군명	조례 (유,무)	지원액	지원대상 및 범위	비고
17	평택시	○	전부 또는 일부	10호 이상의 주택	
18	포천시	○	전부 또는 일부	10가구 초과 주택	
19	오산시	○	전부 또는 일부	10개동 이상의 주택	
20	하남시	○	전부 또는 일부	10세대 이상의 주택	
21	광주시	○	일부	10동 이상 주택	
22	남양주시	○	일부	10채 이상의 주택	
23	성남시	○	일부	10동 이상의 주택	
24	의왕시	○	일부	10세대 이상인 지역	
25	화성시	○	일부	10동 이상의 주택	
26	용인시	○	예산범위	10호 이상의 주택	
27	광명시	×			
28	구리시	×			
29	군포시	×			
30	시흥시	×			
31	안양시	×			